고용노동부	보도참고자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6. 10.(금)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	책임자	과 장 강검윤 (044-202-8950)
		담당자	사무관 남덕현 (044-202-8961)

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「**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**」 **제8조**에 따라 **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**를 대상으로 **안전보건교육을 실시**했다.

■ **중대재해처벌법 제8조(안전보건교육의 수강)**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* (미이수시 과태료) '1차: 1천만원', '2차: 3천만원', '3차: 5천만원'(1년내 반복 위반)

■ **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**(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)

① **(교육주체)**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안법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

② **(교육시간)** 20시간 이내

③ **(교육내용)**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,
중대산업재해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

④ **(교육절차)** 분기별 교육대상자 확정 → 30일 전까지 장소·일시 통보
(경영책임자는 1회에 한하여 교육참여 연기 가능)

□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**교육대상자는 분기별로 확정**하며,

○ **교육대상자**로 확정된 1분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**13개 법인의 14명의 대표이사**(1개 기업의 경우 공동 대표이사)이고

- **6월 10일에는 이 중 8명의 대표이사**가 교육을 수강했다.

□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,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**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** 위주로 마련됐다.

○ 강의는 온라인 **6시간**, **집체교육 6시간(1일) 총 12시간**으로 구성했으며 **집체교육은 6월 10일에 1회차 진행했으며, 6월 17일에 2회차가 진행될 예정이다.**

○ 특히, 이번 집체교육은 **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**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들로 구성됐다.

❶ **'안전문화' 이해**와 **'안전문화' 정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리더십**

❷ 기업별 **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** 및 **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역할 논의, 전문가 컨설팅**(소규모 분반 운영)

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상 **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실행방안**

❹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**주요 중대산업재해 사례**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**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안전·보건조치**

□ **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**은 6월 10일 경영책임자 교육에서,

○ **"이번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중대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"**을 강조했고,

○ **"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심 어린 관심에 있다며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경영책임자가 솔선수범해줄 것"**을 당부했다.

붙임 1.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개요
2.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개요

□ (개요) **중대재해처벌법 제8조**에 따라 **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**의 **경영책임자등**을 대상으로 **안전보건교육 실시**

□ **(교육대상)** 중대산업재해가 **발생**한 **법인 또는 기관**의 **경영책임자**

○ 다만, 발생 이후 경영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**재해예방**이라는 **입법취지**를 고려할 때, **교육 시점**의 **경영책임자**가 교육대상

○ **교육대상자를 확정**하기 전에 **여러 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**하였다면 이를 모두 포괄하여 **1회의 교육 의무** 부여

<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교육 수강 주요 내용 (중대재해처벌법 제8조, 시행령 제6조) >

① **(대상)**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

② **(교육내용)** 20시간 이내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·보건에 관한 경영방안,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

③ **(교육절차)** 고용노동부 장관은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의 교육대상자 확정 → 30일 전까지 장소·일시 통보(1회에 한하여 연기 가능)

④ **(과태료)** 미이수시, '1차: 1천만원', '2차: 3천만원', '3차: 5천만원' (1년 내 반복 위반시)

□ (교육 운영)

○ **(동영상 교육, 6h) 안전보건관계법령, 사고재해 유형 및 예방 방법**

○ **(집체교육, 6h) 특강 + 토론형 분반 교육**

○ **(STEP1·2)** 교육대상별 **단계적·심화 교육 운영**

- **(STEP 1) 최초 교육대상자 대상,**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**'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' 구체적 실행방안 중심 교육**

- **(STEP 2)**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**중대산업재해가 재발**하여 **다시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법인·기관**의 **경영책임자** 대상 교육

* **'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운영'에 중대한 하자**가 있는 기업으로 **현황진단 등 추가 과제 부여 등 컨설팅** 방식의 **심층 교육 진행**

붙임 2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

□ **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안전보건교육의 수강)**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□ **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(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)**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(이하 "안전보건교육"이라 한다)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.

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·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
2.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(이하 "안전보건교육기관등"이라 한다)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1.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
2. 교육일정
3.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

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.

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.

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.

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.